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승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0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이승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 경, 김성준, 박강산,
박철성, 성흠제, 아이수루,
, 유정희, 이민옥, 이영실,
이용균, 이원형, 임규호,
임만균, 최재란, 한 신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대안교육지원센터는 기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」에 따라 설치 운영되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정('23.1.12.)으로 기존 조례가 폐지되며 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.
- 또한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시행으로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 책무도 커짐에 따라,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일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효율적·전문적으로 지원·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센터 설치 운영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기관의 등록(지정)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교육기관 회계·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기관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
4. 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
5.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
6.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
7. 그 밖에 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6조(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) ①</p> <p><u>교육감은 대안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교육기관의 등록(지정)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2. <u>교육기관 회계·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</u> 3. <u>교육기관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</u> 4. <u>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</u> 5. <u>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</u> 6. <u>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</u> 7. <u>그 밖에 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</u> <p>③ 교육감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</p>

제6조 ~ 제10조 (생략)

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 ~ 제11조 (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